

# 산업재해 장해자의 합리적 복지 방안에 대한 연구

김 병 석\*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 A Study on Welfare Plan of industrial disaster victims

Kim Byung-S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fortation safety engineering professor

### Abstract

Employee suffered by industrial accident will face mo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mentally tough life than life of employee before industrial disaster. however, in this study, we will study for welfare and reasonable compensation about how a country or society helps disaster victims in the industry put a little more unhappy because of the disaster of the injustice. I am to look into the rational compensation and welfare of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in terms of linking and expanding into social corporation and preparing policies of selecting major companies and prizing policies that can help the disabled if not in direct and monetary ways.

**Keywords : Compensation Welfare of Industrial Injury Victims**

### 1. 서 론

산업기술이 점점 발달해가면서 생산현장의 여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또한 중대재해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근로 중 산업재해라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가 손실되는 장해의 상태로 사회구성원들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 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게 되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력의 일부나 전부가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을 금전적

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 장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복지에 대한 개선을 산업재해 장해자 자신의 문제점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건강하고 부강하게 만들어 가는 실천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여겨진다. 물론 현행 관련 법규상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복지가 있지만 이를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보상과 복지방안은 매년 발생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재해 장해자들의 사회적 비용부담과 비중을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좀 더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산업재해 장해자들에 대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합리적 복지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Kim Byung-S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Geomdan-ri, Daesowon-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M · P : 043-841-5335, E-mail: bskim48@ut.ac.kr

Received September 9, 2013; Revision Received December 5, 2013; Accepted December 16, 2013.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현행 산업재해 장애자에 대한 장애보상 및 복지제도에 대하여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산업재해장애 보상 및 복지제도의 수혜자인 산업재해 장애자(예정자)의 입장에서 합리적 보상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의 최종등급을 결정하는 불합리성의 시비의 범위로 연구하였다.

### 3. 현행산업재해장애자의 제도분석

#### 3.1 판정절차 및 기준

현행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장애진단, 장애심사,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Figure 3-1 참조]



[Figure 3-1] Disability rating assessment procedures

#### 3.2 현황 및 실태

##### 3.2.1 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011년 보험급여는 3,625,39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1,663백만 원, 2.89% 증가하였고, 수급자수는 278,585명으로 전년대비 25,306명, 9.99% 증가하였다. 급여종류별로 보면, 휴업급여, 상병연금 및 장의비의 수급자수는 감소하였으며, 지급액 역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연금, 장의비의 지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재활급여 수급자수는 196.9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급액 역시 233.6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급여 수급자수는 요양급여 수급자수가 204,873명으로 가장 많고, 휴업급여 수급자수가 114,406명, 장애급여 수급자수가 91,906명 순이다. 지급액은 장애급여가 1,509,245백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요양급여 761,560백만 원, 휴업급여가 719,908백만 원 순이다.

##### 3.2.2. 장애등급판정현황

###### 1) 연도별 장애등급 판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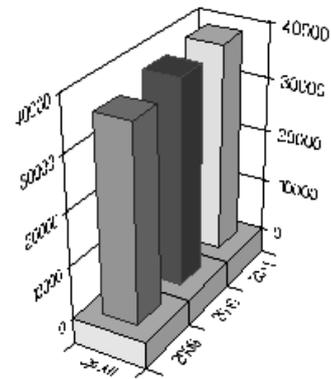
(가) 2009년~2012. 4월까지 신규로 산재보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127,167명이고, 2009년은 36,464명, 2010년은 38,077명, 2011년은 38,846명으로 신규 장애판정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Figure 3-2 참조>

(나) 신규장애판정자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중증장애자가 1.91%(2,428명), 제4급~제7급이 6.50%(8,268명), 제8급~제14급의 경증장애자가 91.58%(116,47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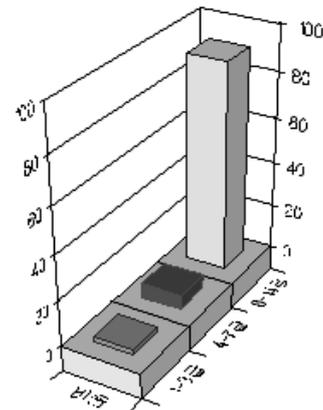
(Figure 3-3, Figure 3-4, Figure 3-5 참조)

###### (다) 연도별, 장애등급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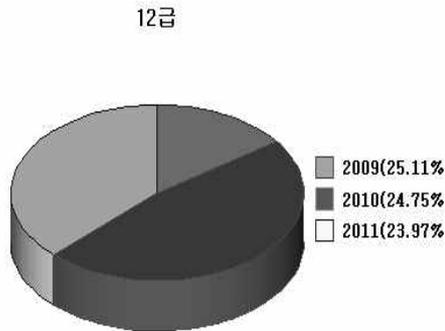
① 제12급 판정자가 2009년에 25.11%(9,156명), 2010년에 24.75%(9,425명), 2011년에 23.97%(9,312명)이다.



[Figure3-2] Disability rating assessment status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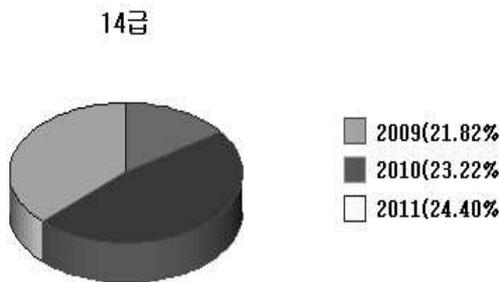


[Figure3-3] Disability assessment status by rate



[Figure 3-4] Disability assessment status rating for 12

② 제14급 판정자가 2009년에 21.82%(7,955명), 2010년에 23.22%(8,840명), 2011년에 24.40%(9,47명)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Figure 3-5] Disability assessment status rating for 14  
 ※ 자료 :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011년도)』

2)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현황

(가) 장애판정자의 장애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3년간 총 판정자 127,167명 중 부위별 판정건수는 150,007건이었으며 팔·손가락 42.97%(64,463건), 다리·발가락 29.55%(44,325건)로 7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척추장애가 15.17%(22,760건), 그 외 부위 장애가 12.31%(18,459건)를 차지하였다.

(나) 부위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팔·손가락 장애의 경우 2009년 41.25%, 2010년 42.60%, 2011년 44.15%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리, 발가락, 척추의 경우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다) 결정형태별 장애등급 판정현황  
 장애등급 판정 형태와 관련하여 단일 부위 장애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현황은 전체 판정자 127,167명 중에 75.78%(96,363명)이고, 같은 계열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남아 준용 등급을 결정한 경우가 11.75%(14,937명)이며, 다른 계열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남아 조정 등급을 결정한 경우가 11.34%(14,424명)를 차지하며,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재해발생일 이전 기존 장애

가 관여하여 가중 장애등급으로 결정된 현황은 1.13%(1,443명)로 적은 비중을 보인다.

따라서 상기사태와 같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장애자의 합리적 장애판정과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보다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사료된다.

#### 4. 산업재해 장애자의 합리적 보상 및 복지 개선방안

##### 4.1 장애등급조정방법개선

장애보상급여의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데는 조정, 준용, 가중의 방법을 이용한다.

여기서 조정의 장애보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정등급이란 장애등급Table에 의한 신체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계급에 의하거나 또는 그 중 한쪽의 등급을 1급 내지 3급을 인상하여 당해 장애등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장애등급 결정 방법 중 조정등급 결정방법(조정에 의한 준용방법 포함)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신체의 여러 부위에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이를 각각 조정해서 각 장애등급 중 최상위 등급에서 1급 내지 3급을 상향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조정(조정준용) 장애등급 결정방법인데 여기서 조정하여 등급이 상향되더라도 그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문란의 원칙을 내세워 신체장애의 각 조정 장애등급 외에 존재하는 상위 장애등급과 같거나 초과하여서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신체장애의 신체부위별 장애등급은 여러 가지이나 서열문란의 원칙으로 인해 신체장애등급 중 최상위인 한 개의 장애등급만으로 결정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장애등급은 산재 장애자가 한 개의 장애등급을 결정 받는 것이나 여러 개의 장애등급을 결정 받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물리적 손실과 금전적 손실, 정신적·심리적 손실을 복합적으로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장애등급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으로 위 서열문란의 원칙은 지키되 장애등급 체계를 확대하여 장애등급을 아래와 같은 장애등급 결정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able 4-1> Disability rating rationality example due to rating errors principle

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장애등급 6급 6호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장애등급 12급 9호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장애등급 10급 10호

<Table 4-1>과 같이 신체장애등급 모두를 조정하면 조정에 의한 준용등급 5급(최상위 등급 6급에 대하여 1 개 등급 상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서열문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장애등급 결정방법으로 인하여 5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보다 한 개 등급 아래인 준용 6급으로 결정 받게 된다. 이유로는 5급에는 이미“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급4호)”의 장애등급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신체 장애정도가 5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6급의 장애등급을 결정 받는 것은 위 가항과 같이 6급 6호의 장애등급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 존재하므로 다른 2개의 장애등급은 신체손실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장애등급 체계를 현행 제1급 내지 제14급을 확대하여 조정의 장애등급결과 서열문란의 원칙으로 인하여 상위등급으로 진입하지는 못하여도 서열상 이미 존재하는 상위등급과 신체장애로 인한 장애등급의 최상위 등급과의 중간 등급을 인정하여 서열문란의 원칙도 지키고 신체장애손실에 대한 장애등급도 보호 해주는 합리적 보상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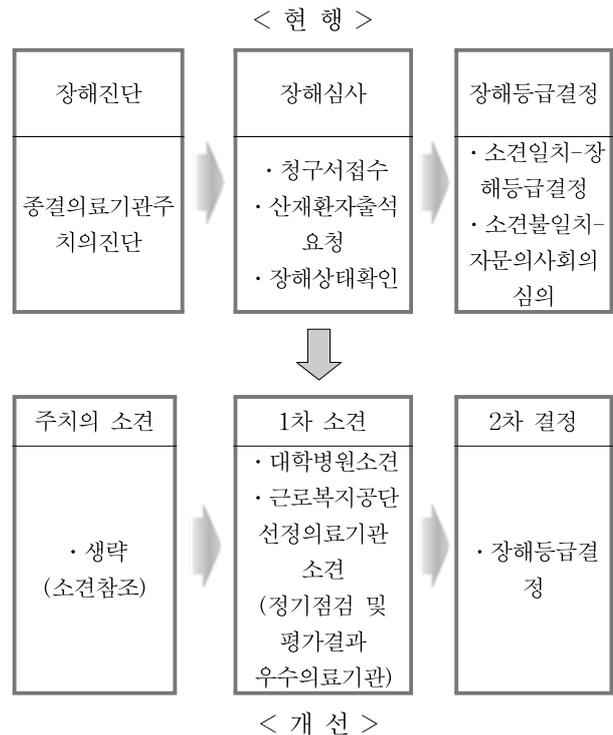
위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서열상 최상위 등급인 제5급과 신체장애등급 제6급의 중간등급인 제 5-1등급 또는 5와 1/2등급 등으로 결정하여 해당등급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5급4호 장애등급보다는 덜하고, 6급 6호 장애등급보다는 중하게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되어 서열준수 원칙도 지키고 실질적 신체장애에 대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좌우수에 대한 잘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의 장애율 적용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장애등급판정에 있어서 좌,우측 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 4.2 장애등급판정절차 개선

현행의 장애등급판정절차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이를 자문의사가 검토 후 등급을 달리 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소견간에 이견이 있어 장애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걸쳐 최종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장애등급결정에 대한 설문분석결과 현행방법인 주치의 소견을 자문의사가 검토하고 등급이 상이한 경우 자문의사회의를 걸쳐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많은 응답자가 위 현행방법을 공정성, 투명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현행의 장애등급판정 절차를 투명성 및 공정성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재해장애자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방법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치의 소견에는 산재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사의 산업재해장애자의 주관적 입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제3의 의료기관(현행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정기점검 및 평가결과 우수한 산재지정의료기관을 선정)에서 장애소견을 받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거나, 객관성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학병원의 소견을 근거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방법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Figure 4-1 Disability rating assessment procedures improvements]

## 5. 결 론

산업재해를 입고 장애를 당하여 불합리한 장애판정을 받는 것은 한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문 제까지 심각한 상황일수 밖에 없다. 불합리한 장애등급 즉, 신체장애를 결정하는 일방적 기준을 보다 더 합리 적으로 다음사항을 핵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산업재해를 입고 불합리한 장애등급과 조정절차를 합리 적으로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제시를 하였다.

현행 장애등급절차의 주치의 소견과 지문의사의 의견 이 다를 경우에 현행제도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제3의 의견(정부인정 우수선정 의료기관)의 장 해조건을 통한 장애등급판정절차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보다 더 합리적 복지방안을 위해서는 참고문헌과 현 장 주관적 의견보다는 여러 전문가의 객관적 설문지등 을 통해 자료의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합리적 복지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분야가 있다 고 판단된다. 장애등급방법 및 판정의 개선안 이외의 다 른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사료되며 보상복지제도의 한 분야만이라도 정책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6. References

- [1] Byung-Suk kim, Tae-Sik Shin (2008) "Industrial accidents compensation and prevent", Hyungseul Chulpansa, 1:87-107
- [2] Sang-kuk Lee(2000), "Industrial accidents compensation insurance law", (Ju)Chungammedia Hon gikjae, 1:46-53
- [3]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2005) "Disability assessment standard", (Ju)Seoulmed book, 1:65-66
- [4]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Labor researcher(2008), "Disability assessment"
- [5]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1), "Hire · Industrial accidents insurance Wor king handbook"
- [6]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1), "Disability rating assessment standard Commentary"
- [7]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Labor researcher(2008), "Disability assessment"
- [8]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1),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Statistics Annual report"

## 저 자 소 개

### 김 병 석



건국대학교 학사, 연세대학교, 동 국대학교 석사, 명지대학교 산업 공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부회 장, 대한 안전관리 연구회 회장, 한국산재보험학회 회장.

주소: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우성아파트 3동 1103